

대신대학교 부설연구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부설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연구소라 함은 각 분야별로 학문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말한다.

제 3조(사업시행) 각 연구소는 규정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4조(연구소) 본교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소 : 본교의 학칙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된 연구소로서 교비지원을 받는 연구소이다.
2. 각 연구소는 비교과과정 운영 및 교원의 교수역량강화와 학생들의 학습역량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한다.

제 5조(설치신청)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연구소 설치 사유서(취지, 목적, 필요성 및 배경)
2. 연구소 설치 발기인 명부(해당분야 전임교원 3인 이상)
3. 연구소 규정(안)
4. 연구소 예산 및 사업계획서
5. 연구소 조직표
6. 기타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참고자료

제 6조(설치 승인 등)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통하여 학칙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7조(임원) ① 연구소에는 소장 1명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“대신대학교 보직교원 임기규정”에 따른다.

제 8조(소원) ① 연구소 소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본 대학교의 교원은 1개의 연구소의 소원이 된다. 다만, 학문의 특성상 필요할 때에는 타 연구소의 소원이 될 수 있다.

③ 연구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된다.

제 9조(연구원, 명예소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인사중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과 명예소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과 명예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신학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전학년도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. 전학년도 사업결과 보고서를 신학년도 초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3. 매 회계연도의 예·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4. 연구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이를 제출한다.
5. 연구소원이 변동될 때는 변동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논문집 발간) ① 일반 연구소는 매년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으며,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소장은 발간된 논문집 2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정)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②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 연구보조금, 학술용역비, 사업수익금,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평가) ① 일반연구소는 매 2년마다 연구활동과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의 존속여부 내지는 연구소 지원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의 평가는 학술연구심의 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제14조(사무) 연구소에 관련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2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